

부 모 교 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목 차 ■

1. 기능향상지원1팀

- 15-01 감각통합의 이해와 가정에서의 접근방법 5
- 15-02 애착증진을 위한 놀이 활동 14
- 15-03 인지발달 단계별 특성과 인지발달을 위한 지도방안 19
- 15-04 미술로 아이와 소통하기 26

2. 가족문화지원팀

- 15-05 가족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31
- 15-06 성인기 장애자녀의 자립을 위한 부모역할 42

3. 열린일터

- 15-07 2015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50
- 15-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6

4.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15-09 2015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85
- 15-10 장애자녀의 성교육 지도방법 90

감각통합의 이해와 가정에서의 접근방법



팀 명	기능향상지원 1팀
일 시	2015년 04월 13일 ~ 04월 24일
담당자	작업치료사 임주성

감각통합의 이해와 가정에서의 접근방법

1. 감각통합에서 말하는 감각이란?

감각이란 우리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차적인 자극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각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는 다섯 가지 감각을 들 수 있다. 신경학적인 측면에서의 감각은 이 다섯 가지 감각에 체감각과 전정감각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이 중 체성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촉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을 포함한다. 인간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과 같은 특수감각들은 인간의 행동과 자세-운동, 동작 등과 관련된 촉각, 고유수용감각, 전정감각계로부터 오는 일반감각 정보들을 통해 더욱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1) 촉각

촉각은 표면감각이라 하여, 피부의 겉면에서 느끼는 감각을 의미한다. 촉감, 온감, 냉감, 통감 등을 의미하며, 여러 감각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계이다. 촉각은 태내에서부터 발달을 시작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사회성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촉각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보호 기능과 구별 기능이 있다. 보호 기능은 일차적인 촉각 기능으로 외부의 위험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 가벼운 자극에 크게 반응한다. 보호기능은 온감, 냉감, 통감 등이 사용된다. 구별기능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접촉했는지, 접촉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일정한 압박이 더 효과적이며, 사물을 3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구별기능에는 압감, 촉감 등이 주로 사용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촉각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두 가지 기능이 상황에 따라 균형 있게 작용하여야 한다.

2) 고유수용감각

고유수용감각은 자세와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세감각, 운동감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유수용감각의 감각수용기는 근육과 관절 내에 분포하여, 스스로의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통하여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해야하는지를 알게 되고, 관절의 각도를 변화시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고유수용감각은 신체상의 확립과 운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유수용감각에 문제가 있다면, 뻣뻣하거나 둔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활동 시에 너무 세게 잡는 등 적절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3) 전정감각

전정감각은 환경, 특히 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각으로 중력에 대하여 머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아주 민감한 기관이다. 전정감각은 머리의 내이 속의 세반고리관, 구형낭, 난원낭을 감각수용기로 하며, 머리의 움직임과 중력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인식한다. 전정 감각수용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근 긴장과 협응, 균형과 평형, 안구 운동 조절, 각성 수준, 감정수준을 조절하는 기초정보로 활용된다. 전정감각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낮은 근긴장을 보이고, 자세유지가 어렵고, 양손 협응과 우세 손 확립이 늦어질 수 있다. 또는, 약간의 움직임에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계속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아무리 회전을 해도 전혀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2. 감각통합과 기능장애

감각들은 분리되어 따로따로 일할 수 없으며, 감각 그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감각들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복합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른 감각들과 함께 일한다. 감각정보를 조직화하여 이러한 복합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두뇌의 중요한 기능이 감각통합이다.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떠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감각정보를 기반으로 사물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딸기’를 예로 들면, 시각적 정보로는 딸기의 빨간색과 검은색, 초록색, 하얀색 등의 색과 시각적 크기를 인지하게 된다. 후각적 정보로는 딸기의 향을 인식하게 되며, 미각적 정보로는 그 맛을 인식하게 된다. 촉각적 정보로 딸기의 질감과 꼭지와 과육의 구별을 인지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딸기를 잡는 것을 통해 입력되는 체성감각은 딸기의 단단함, 무게, 크기 등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감각들이 두뇌 안에서 모이고 통합되어 딸기에 대한 내적 표상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관습에 따른 방법으로 딸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감각통합은 아동의 활동을 통하여 발달하며,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노력 없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감각통합 기능장애를 가진 경우는 이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정확하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노력과 집중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감각통합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면, 학습, 발달, 행동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아동이 비록 머리가 좋지만, 연필을 사용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또는 옷입기와 같은 자조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또는,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그네, 미끄럼틀 또는 정글짐을 사용하는데 공포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억제되지 않고 과하게 활동적이고, 자주 넘어지며, 위험한 상황으로 성급하게 달리는 아이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의 각각에서 감각통합적 문제가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감각통합장애의 분류

1) 감각 조절 장애

감각입력에 대한 반응을 행동적으로 조정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감각조절이라 한다. 신경생리학적으로 자극의 흥분과 억제에 대한 균형을 의미하고 이러한 기전을 통해 환경변화에 적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감각조절장애의 경우, 주로 행동의 문제로 나타나며, 자신의 신체와 외부환경으로부터 입력된 감각정보에 대한 조절 능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 과소반응, 과민반응 또는 양쪽을 모두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감각조절장애는 감각방어, 중력불안, 움직임에 대한 회피반응, 감각에 대한 과소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감각방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감각영역에서 해롭지 않은 감각자극에 대해 과도한 보호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피하거나 공포,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과잉행동 또는 특정감각에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아동기에 나타나게 되면, 주변을 탐색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 촉각방어

접촉이나 촉각경험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촉각방어이다. 촉각방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백화점,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은 장소를 싫어한다. 또한 머리를 감거나 자를 때 거부감이 심하거나, 특정한 옷을 싫어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예) 다른 사람과 스치면 하루종일 긁는다/모자를 쓰면 머리를 조여 오는 것 같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모래사장에 맨발로 들어가기 싫어한다

□ 구강방어

음식의 특정 재질과 입으로 하는 활동을 할 때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구강방어이다. 각 개인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음식이 다르다. 부드럽고 물경한 음식 종류를 피하는 사람도 있고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회피반응의 정도도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입안에서 특정 감각을 느끼기 위해 물건을 씹거나 빠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영아기부터 먹는 것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예)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은 죽음에 도전하는 것 같다/칫솔이 입에 들어가면 감전된 기분이다/특정재질의 음식만을 먹으려고 한다

□ 자세불안

자세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 움직임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자세불안이다. 평평하지 않은 지면이나 경사진 지면 등 다양한 지면 위를 걷거나 몸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예) 발을 떼기 무서워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 한다/평균대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

□ 고유수용성 감각방어

관절이 눌려지거나 당겨졌을 때 관절에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 고유수용성 감각 방어이다. 서있을 때, 물건을 당기고 밀 때, 뛰어 오를 때, 관절에 무게가 가해지는 활동들을 피하기도 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을 싫어하는 아동들이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방어는 드물지만 다른 유형보다 심각한 문제들을 나타낼 수 있다.

예) 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에 울어버린다/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놀기만 한다

□ 청각방어

특정 소리에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청각방어이다. 청각방어가 있는 경우에는 진공청소기, 화재경보, 알람 소리 등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

예) 시끄러운 소리는 귀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장난감에서 나는 전자음이 무섭다/풍선이 무섭다

□ 시각방어

불빛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거나 시각자극에 대해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시각방어이다. 시선 접촉을 피하거나 시각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산만해 지기도 한다.

예) 어두워야 마음이 편안하다/사람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 그 외 후각, 미각, 온도, 진동 등의 감각영역에서 방어를 가질 수 있다

② 중력불안

머리의 위치 변화와 움직임에 대해서 부적절한 공포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중력불안이다. 직선, 회전, 상하 등의 자극이 주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바닥에서 발이 떨어질 때와 머리가 뒤쪽이나 앞으로 기울어 질 때 주로 공포를 느끼며, 회전목마, 자전거,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공포를 느낄 게 된다.

예) 엘리베이터를 타느니 차라리 계단을 걷는다

③ 움직임에 대한 회피반응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인이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움직임에 대한 반응에서 발생한다. 자율신경계 반응에 의해 특성화되며, 중력불안과 유사하게 움직임에 대해 회피적인 반응은 전정감각정보의 부족한 처리와 연관을 나타낸다. 세반고리관의 가감속의 방향과 비율감지의 부족한 처리를 반영한다.

예)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 무서워 운다

④ 감각에 대한 과소반응

주어진 감각자극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반응하거나, 일반적으로 기대한 반응보다 훨씬 낮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통증에 대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연된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 세계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2) 실행장애

실행장애는 두 가지 이상의 감각계가 연관되어 하나의 장애의 유형이 나타나는 유형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말하는 ‘실행’이란 새로운 움직임을 개념화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으로, 의식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실행은 단순한 정보의 입력인 감각입력에 대해, 반응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신체와 언어, 기억, 인지 또는 사고기술과 같이 환경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한다. 실행의 과정은 관념화, 피드백을 통해 신체의 시작자세를 정하기, 행동의 시작, 필요한 단계의 순서화, 적절하게 행동 조절하기, 행동의 마무리로 이루어진다. 실행장애는 초기의 목적있는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조직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촉각계, 전정감각계, 고유수용성계 즉, 감각과정의 저하로 인해 나타난다. 촉각기능에 문제를 지닌 아동은 운동실행계획이 떨어지게 된다. 아동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운동실행계획능력이 떨어지거나, 자신의 동작을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아동은 운동실행계획능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회피하게 된다. 고유수용성계의 기능 이상이 있는 아동 또한 운동실행계획에 어려움을 보인다. 이러한 아동은 동작 협응 상태가 좋지 않고, 한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 같은 대근

육 활동의 조절이 어려우며, 물건을 쥐거나 작은 장난감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전정감각계의 기능이상이 있는 아동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전정감각계의 기능이상이 있는 아동이 욕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으나, 자동차 안으로는 어떻게 발을 들여놓을지 어려워하기도 하고, 롤러스케이트는 배울 수가 있지만 스케이트나 인라인 타기를 배우는 것은 어려워하기도 할 수 있다. 운동계획문제를 가진 아동은 자기-관리 기술, 입술, 혀, 턱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운동계획문제를 가진 아동은 학습에도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실행장애는 대체로 경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3세 이전에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며, 전학령기가 되면 일상생활 동작 기술이나 놀이활동에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행동특성으로는, 사람과 사물을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쉽게 좌절하고,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피하려고 하며, 신체적 조절능력의 부족을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고 한다(움직이지 않고 말로 대신하려고 한다).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또래 아이들을 구경하는 시간이 많다. 또 갑자기 울고, 갑자기 즐거워지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지적 손상이 있을 경우, 단순히 실행능력이 나쁘다고 실행장애로 보지 않고, 운동계획 문제로 운동결함을 보일 때만 오직 실행장애로 본다. 그리고 운동계획이 다른 인지영역의 수행에 비해 확연히 나쁠 때 실행장애로 본다.

① 체성실행장애

체성감각 정보, 특히 촉각정보의 처리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타나며 전정-고유수용계 처리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감각처리의 피드백과 피드포워드에 의존하는 모든 운동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

예) 딸기를 잡을 때, 너무 세게 잡아서 뭉개버리거나, 너무 살짝 잡아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인다. 연필을 사용할 때, 연필을 잡는 것과 글씨를 쓸 경우 그에 적절한 힘 조절이 어려워서 힘을 많이 주다 연필심이 부러지거나 희미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② 양측성실행장애

실행장애의 경한 형태로 나타나며, 신체 양측을 협응해서 사용하고 움직임의 순서화 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시각과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의 처리과정에 어려움을 보이며, 감각처리의 피드포워드에 의존적인 운동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예) 캐치볼을 하면서 공을 받을 때, 던져주는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하여 공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 감각통합에 어려움을 보일 때 나타나는 행동들

- ① 대인관계의 발달이 왜곡되거나 늦어지게 된다.
- ② 장난감이나 놀이 기구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 ③ 주의 집중력이 뒤떨어진다.
- ④ 근 긴장의 저하와 바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 ⑤ 자세의 조절이 잘 안된다.

- ⑥ 안구 운동 조절이 어렵다.
- ⑦ 자극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욱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한 행동이 보인다.
- ⑧ 양손의 협응과 좌우 손(우세수)의 구별과 발달이 늦어진다.
- ⑨ 좌뇌와 우뇌의 역할 분담이 잘 안되어 언어 중추의 성장이 늦어진다.

4. 감각통합 장애의 접근 방법

1) 촉각방어 반응

아동의 발달은 촉각과 관련된 보호계와 구별계가 적당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 촉각방어 반응을 나타내는 아동은 주로 보호계의 활동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구별계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별계의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피부접촉의 한 방법으로 압박자극을 시도할 수 있다.

□ 놀이활동의 예

- ① 아동과 악수를 하거나 자주 안아주기
- ② 가능한 한 신체 접촉이 많은 놀이(레슬링, 씨름 등)하기
- ③ 감촉이 다른 천으로 신체 여러 곳을 문지르기
- ④ 아동의 옷이나 침구 및 장난감의 소재를 자주 바꾸기
- ⑤ 맨발 벗고 모래 위나 카펫 위 걷기
- ⑥ 모래, 찰흙, 밀가루, 비누거품 놀이
- ⑦ 치료교육용 큰 공을 아동의 몸 위에 올려 굴리기
- ⑧ 아동을 두 장의 매트 사이에 놓고 누르기
- ⑨ 아동이 등을 서로 맞대고 일정한 크기의 원 밖으로 밀어내는 놀이하기
- ⑩ 아동의 신체 각 부위에 스티커나 테이프를 붙여두고 하나씩 떼기
- ⑪ 로션을 손에 묻혀서 바닥에 그림 그리기
- ⑫ 마주 앉아서 상대방의 눈/코/입 만지기
- ⑬ 눈 가리고 가까운 거리의 상대방 잡기 놀이

2) 운동기능 장애

운동기능에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는 우선 촉각과 함께 고유감각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아동이 스스로 운동을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운동기능의 개선은 단순히 신체적 활동의 반복훈련에 의한 것보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움직임의 자각하고, 근력이 아니라 근긴장도를 조절하는 힘을 갖출 때 더욱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놀이활동의 예

- ① 네발기기로 마루에 엎드려 앞으로 또는 뒤로 천천히 한 걸음씩 옮기기
- ② 계단이나 정글짐, 또는 경사진 언덕길 기어오르내리기

- ③ 나무에 매어 달리거나 기어 오르기
- ④ 트램폴린 위에 설치된 농구골대에 트램폴린을 한번 뛰면서 공 집어넣기
- ⑤ 뒤로 누운 자세로 타이어나 그물 속 통과하기
- ⑥ 긴 줄넘기 놀이하며 행동하기
- ⑦ 제기차기, 공기 놀이하기
- ⑧ 공차기 놀이하기
- ⑨ 스쿠터보드에 엎드려 팔로 바닥을 짚고 앞으로 또는 뒤로 움직이기
- ⑩ 표적맞추기 놀이하기
- ⑪ 그림카드나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서 움직이기
- ⑫ 이불로 김밥놀이/햄버거 놀이 하기
- ⑬ 철봉에 매달리기
- ⑭ 무거운 공 양손으로 들어서 옮기기
- ⑮ 손수레 걷기

3) 전정계 통합 장애

전정계 통합에 장애를 아동의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정계는 속도의 변화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며, 속도의 변화로 초래된 자극이 신경계 전체에 흥분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위해, 급격한 가속이나 급속한 정지와 같이 속도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 놀이활동의 예

- ① 스쿠터보드 위에 엎드려 타고, 경사로 내려오기
- ② 회전목마 등 회전하는 기구타기
- ③ 그네 또는 줄그네 타고 물건 넣기 놀이하기
- ④ 줄에 매어 달린 타이어에 올라타고 수평으로 움직이기
- ⑤ 떨어지는 기계 위에 올라타고 앉거나 서기
- ⑥ 평형판 위에 올라서서 균형 유지하며 공 받기/던지기
- ⑦ 여러 개의 타이어가 연결된 원통이나 드럼통 속에 들어가 옆으로 구르기
- ⑧ 두 사람이 아동의 손목과 발목을 잡고 흔들거나 큰 수건에 태워 흔들기
- ⑨ 타잔처럼 줄잡고 옆으로 이동하기
- ⑩ 큰 공 위에 아동을 눕혀놓고 발을 잡고 상체를 전·후·좌·우로 이동시키기
- ⑪ 이불 위로 점프하기
- ⑫ 이불 그네 타기/이불 스쿠터 타기
- ⑬ 큰 공으로 상대방 맞추기

5. 제언 및 결론

감각통합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아동의 욕구에 의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과정이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긴 시간에 걸쳐 획득하기도 하고, 앞선 경험 등에 미루어 짧은 시간

내에 획득하기도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감각입력의 제한을 보이게 되며 그로 인해 통합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가정에서의 다양한 자극 활동을 통해 부족한 감각 입력을 돕고 감각 처리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감각활동을 진행하는 중에서 아동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참고문헌

- Sensory integration theory and practice. Bundy. A. C., Lane, S. J., & Murray, E. A.
감각통합과 아동. A. Jean Ayres.
작업치료 보수교육 자료집(뇌성마비 아동의 감각통합치료). 이지영.
작업치료 보수교육 자료집(감각통합이론의 임상적 적용). 지석연.

애착증진을 위한 놀이 활동



팀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시	2015.06.10 ~ 2015.07.01
장소	놀이심리지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애착증진을 위한 놀이 활동>

1. 애착이란?

- 애착이란 아동이 어머니와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로서, 불안감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다가서서 접촉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을 말한다. 생의 초기에 아기는 사회적 행동 표현을 선택적으로 보이면서 특히 친숙한 사람, 대개는 어머니에게 정감적 유대를 갖게 된다.

1) 애착형성의 요인

- 접촉의 경험은 영아기 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달단계에서도 애정형성을 위한 필수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촉할 기회가 적으면 애정적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 영아기 동안의 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은 타인에 대한 애정형성의 바탕이 된다.

2) 애착형성단계

- 애인스워스는 애착발달의 4단계를 제시하였다.

·제 1단계 (출생~3개월)

출생 후 3개월 동안 영아는 양육자와의 근접을 유지하고 양육자를 그들 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동을 한다. 빨기반사, 젖 찾기 반사, 파악반사를 사용하고 미소를 응시한다. 또한 양육자에게 바짝 달라붙거나 눈으로 추적함으로써 양육자와의 근접을 유지하려고 한다. 영아는 감각적 접촉을 통하여 양육자의 독특한 특성을 알게 된다.

·제 2단계 (3~6개월)

영아의 애착은 몇 사람의 친숙한 성인에 대한 선택적인 반응으로 표현된다. 영아는 친숙한 사람이 나타나면 미소짓고 흥분하며 그가 떠나면 당황해 한다.

·제 3단계 (7개월~걸음마기)

애착대상에게 능동적인 신체적 접근을 추구한다. 영아들은 애착대상에게 접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 4단계 (걸음마기 이후)

걸음마기가 지나면 아동들은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시도한다. 아동들은 이야기책을 읽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잠들기 전에는 껴안아주고 외출 시에는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행동들은 부모에 대한 근접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아동이 사용하는 전략들이다.

3) 낮가림과 격리불안

- 특정인에 대한 애착형성의 표시인 낮가림과 격리불안은 영아기 후반에서 나타난다.
- 낮가림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반응으로서 생후 6~8개월경에 나타난다. 이시기의 영아들은 낯선 성인의 존재에 대해 불유쾌한 표현이나 긴장된 행동을 나타낸다.

- 격리불안은 부모와 분리될 때 나타내는 슬픔이나 실망으로서 낮가림보다 조금 늦은 생후 9개월경에 나타난다.

4) 애착의 질적 특성

- 성인과 영아 사이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은 가정마다 다르다.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영아를 수용해 주고 그들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네 가지 애착유형을 제시하였다.

·안정애착

밀접한 애정관계를 이루고 있어 아동의 안전기반이 될 수 있는 양육자와 아동과의 유대관계를 뜻하고, 대부분은 영아이다. 어머니와 단 둘이 있는 동안 능동적인 탐색을 하고, 어머니와 격리되면 눈에 띄게 괴로워하고 다시 재결합하면 어머니를 매우 반기고 달려가 신체적 접촉 시도한다.

·저항애착

격리되었을 때 강한 격리불안을 보이면서도 양육자의 접촉에 저항을 보이는 불안정한 영아와 양육자 간의 유대관계이고, 어머니와 떨어지지 못하고 늘 가깝게 있으려고 하며, 어머니가 있는데도 탐색활동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어머니와 격리되면,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나, 어머니가 돌아오면 두 가지 상반된 양가반응을 보인다. 즉, 자기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데 대하여 화를 내고 어머니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가 영아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자 하면 뿌리치곤 하는 반응을 보인다.

·회피애착

어머니와 격리되었을 때 별 고통을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의 접촉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몸을 돌려버린다. 낯선 사람에 대하여 불안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피하거나 무시했듯이 낯선 사람을 피하거나 무시한다.

·혼란애착

양육자에게 접근해야 할지 회피해야 할지에 대하여 혼란을 보이는 저항애착과 회피애착이 결합된 형태이다. 어머니와 재결합했을 때에, 얼어붙은 모습으로 멍한 상태를 보이고, 어머니에게 다가가다가 어머니가 다가가면 갑자기 뒷걸음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학대아동, 심한 우울증을 겪은 어머니의 자녀에게 나타난다.

5) 애착증진을 위한 부모의 역할

1. 양육행동을 자주해라

-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늘려라, 지지와 격려해주는 언어를 늘리고 충분히 위로하라.

2. 개입을 늘려라

-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고민하라, 보다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라.(아이와 마주보고 앉아서 눈을 보면서 대화하기)

3. 도전의 기회를 늘려라

4.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라

-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명확히 해라, 일관성 있게 지키도록 해라.

6) 애착문제가 발생하는 부모의 유형

- 둔감한 부모 :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를 도움 줄 수 있는 존재로 신뢰하지 않는다.
- 방임하는 부모 : 발달이 지연되며, 상호성이 떨어져 혼자 놀거나 사회성 결여된 아이로 성장한다.
- 학대(거부)하는 부모 : 부모를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 피하게 된다.
- 비 일관적인 부모 : 아이 역시 불안이 높아지며, 짜증이 심하거나 눈치를 자주 보는 아이로 성장한다.
- 우울한 부모 : 아이의 욕구가 종종 무시될 수 있으며, 이에 아이의 불안수준은 높아진다.
- 미숙한 부모 : 아이가 어른스러워 보이거나 내적불안이나 분노가 많다.
- 지배적인 부모 : 지나치게 개입하고 지시하여 아이는 엄마를 피한다.

7)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놀이

- 특별한 입맞춤 ex)나비뽀뽀 : 볼에 눈을 대고 속눈썹을 깜박인다.
코끼리뽀뽀 : 서로 나팔 부는 모양으로 뽀뽀 코끼리코로 뽀뽀한다.
- 특별한 자동차 여행 : 엄마가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세기로 흔들어주며 설명해 주고 자동차 여행을 한다.
- 사랑의 발도장 찍기 : 물감 들을 손이나 발에 원하는 색의 물감을 손이나 발에 칠해주고 찍어준다. 놀이 후에 손과 발 부드럽게 닦아주고 로션을 발라주면서 아이의 손과 발을 어루만져준다.
- 거울보기놀이 : 엄마가 하는 행동을 마주보고 따라하며, 신체부위를 움직이고 엄마가 따라 해 보기도 한다.
- 구조놀이 : 부모를 신뢰할 만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전한 구조와 조절을 제공하는 놀이이다. (과잉 활동적이고 집중이 안 되거나 지나치게 자극되거나 혹은 통제 받는 것을 불안해하는 아동에게 중요하다.)
ex) 숨몽치하기(배를 바닥에 대고 바닥에 엎드린다. 몇 번 붙어야 상대방에게 숨몽치가 갈수 있는지 소리 내어 말해보며, 숨몽치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해 입으로 분다.),
엄마 해도 되요(부모가 아동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예를 들어 “내 쪽으로 크게 세 걸음 걸어오기” 아이는 그 지시를 행하기전에 “엄마 해도 되요?”라고 질문한다. 만약에 아이가 묻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아이는 다시 출발점으로 가야된다. 게임 목표는 아이가 마지막에 부모에게 가서 부모를 한 번에 껴안기이다.), 화장지 끊기(화장지로 몸 전체를 말기→신호를 주면 아동이 화장지를 끊고 부모의 품안으로 안기기이다.) 등
- 양육놀이 : 부모와 친밀한 신체적 접촉이나 부모의 보살핌이 주가 되는 놀이이다. (과잉 활동적이고, 공격적이고, 가성숙된 아동에게 유용하다.)
ex) 로션발라주기, 음식 먹여주기, 안고 흔들어 주기, 페이스페인팅, 이불그네, 김밥말기 등

- 개입놀이 : 함께 주거나 받거나 하는 놀이이다. (위축되거나 고집이 센 아동, 회피적인 아동에게 유용하다.)
ex) 거울보기, 까꿍 놀이, 말 타기, 박수치기 게임, 던지기, 밀어보기, 호일로 자국 내기 (호일을 이용하여 아이의 신체 일부분(손, 발, 얼굴, 코, 귀 등)의 자국을 남기게 한다. 다른 한명의 부모가 아동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맞추어 보도록 한다.) 등
- 도전놀이 : 새로운 활동이나 좀 어려운 활동을 해본다. (실패를 경험하기보다 성취감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위축되고 소심하거나 불안한 아동에게 유용하다.)
ex) 균형 잡기, 풍선 테니스, 신문지 편치, 신문지 농구, 씨 뽀시기 경연, 손가락 레슬링, 손잡고 함께 앉았다가 일어나기 등

2. 제언 및 결론

- 애착은 영아와 특정 개인 사이에 형성되는 긍정적이고 정서적 유대관계이고, 애착형성 요인에는 부모의 양육행동, 영아의 기질, 부모의 특성 등이 있으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영아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에 빨리 반응하고 민감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낮은 수준의 후속 반응은 모든 유형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형성된 애착은 이후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안정된 애착형성 이야말로 영아가 성장하여 사회 전반적 모든 영역에서 조화롭게 적응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가족놀이를 활용한 정서중심상담이 청소년 자녀-부모 간 애착증진에 미치는 효과(2013.) 조춘화, 단국대학교
- 아동심리학, 장휘숙, 박영사, 2010
- 아동발달, 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경, 황혜정, 신정, 2010
- 아동생활지도, 박정옥, 김태인, 양서원, 2011

인지발달 단계별 특성과 인지발달을 위한 지도방안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5년 06월 10일 ~ 2015년 07월 01일
장 소	서면교육



나눔동행장애인종합복지관

인지발달 단계별 특성과 인지발달을 위한 지도방안

1. 인지발달 단계별 주요발달 특성과 인지발달

1) 0세 (0~6개월)

* 주요발달 특성

- 누워만 있던 영아는 고개를 가누고, 뒤집고, 잡아 주면 앉게 된다.
-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형성된다.
- 반사적인 미소에서 차츰 사회적인 미소를 짓는다.
- 웅얼이를 시작한다.
- 오감을 통해 사물을 탐색하고 차츰 의도적인 행동을 시도한다.

* 인지발달 특성

- 생후 3개월간 영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3개월 이후에 환경을 탐색하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 자신의 행위로 인해 환경에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즐긴다.
- 4개월 이후에 의도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시도하는 목적성을 갖게 된다.
- 흥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반복하여 행동하기를 즐긴다.

2) 0세 (7~12개월)

* 주요발달 특성

- 신체이동 능력이 증가한다.
- 낮을 가리고 격리 불안을 느낀다.
- 간단한 사회적 놀이를 즐긴다.
- 한 단어~네 단어를 말할 수 있다.
- 대상 영속성이 발달된다.

* 인지발달 특성

- 대상영속성이 발달한다(대략 11개월에 시야에서 없어진 물체를 찾는다).
- 그릇과 그릇에 담긴 것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며, 벽장, 서랍, 용기에 담긴 것을 쏟아 버리기를 좋아한다.
- 끈이 연결된 물체를 가렸을 경우 끈을 당겨 물체를 찾는다.
- 물체를 탐색하는 데 흥미를 보이며 좋아한다.
- 물체를 움직이고 떨어뜨리는 데 흥미가 있다.
- 열고 닫기, 밀고 당기기 등 간단한 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결과를 관찰한다.
- 사람, 물체, 게임, 장난감을 가지고 한 행동 등을 기억해 낸다.

3) 1세 (13~18개월)

* 주요발달 특성

- 성인에게 애정을 표현한다.
- 자아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다.
- 열 가지 정도의 단어를 말하며 두 단어를 결합시키기 시작한다.
- 끊임없이 탐색을 시도하고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며 자신의 놀이를 발달시킨다.

* 인지발달 특성

- 자신이 보지 못한 움직임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숨기는 것을 보지 못하면 대상을 찾지 않는다.
-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있는 기계와 물체에 관심을 보이며 움직일 수 있는 놀잇감을 좋아한다.
- 블록으로 간단한 구성물을 만들고, 놀잇감 쌓기 및 간단한 퍼즐을 한다.
-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탐색을 시도한다.
-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인식하게 된다.
- 자신의 놀이를 발달시킨다.

4) 1세 (19~24개월)

* 주요발달 특성

-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손이 결정된다.
- 강한 행동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
- 놀잇감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가 어렵다.
- 사물을 명명하면서 어휘가 아주 급속히 증가한다.

* 인지발달 특성

- 비슷한 물건을 분류하고 짝 맞추기를 한다.
- 대상 영속성 개념이 완전히 발달한다.
-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물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5) 2세

* 주요발달 특성

-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 언어를 사용하여 어른들과 교류한다.

* 인지발달 특성

- 같은 모양의 도형을 분류할 수 있다.
- 색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각각 다른 시간에 단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 물체의 형체가 변하면 크기, 무게, 부피가 변한다고 생각한다.
- 자기 나이를 안다.
- 거울에서 자기를 확인한다.
- 다른 것을 요구한다.
- ‘약간, 더, 작다, 큰, 없다’ 등을 이해한다.
- ‘더 많은’을 이해한다.
- ‘위, 아래, 옆, 밑, 너머’ 등을 이해한다.
- ‘지금, 곧, 전, 후’를 이해한다.
- 정신적으로 사물과 행동을 분류할 수 있다.
- 자기가 속한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조직화한다.
- 사물을 분류하고, 양, 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한된 생각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6) 3세

* 주요발달 특성

- 기본적인 운동기능이 확립된다.
- 자기통제를 하기 시작한다.
- 친구와 활발히 놀기 시작한다.
- 그림책 등의 줄거리를 이해한다.
- 질문이 많아진다.

* 인지발달 특성

- 상상놀이가 나타나며 상징물을 이용하여 나무토막을 컵이라고 하며 논다.
- 크고 작은 것의 차이를 인지한다.
- 수나 양을 당위로서 보기보다는 지각적 총체로써 파악하기 때문에 길이나 양, 정확한 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다.
- 모든 것에 이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되풀이 한다.

7) 4세

* 주요발달 특성

-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성취에 기쁨을 느낀다.
- 필요한 규칙은 스스로 따른다.
- 구어가 완성되고 문자에 흥미를 갖는다.
- 원인과 결과를 때때로 혼동하면서 이치를 알고자 한다.

* 인지발달 특성

-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 오늘, 내일, 어제(현재, 미래, 과거)의 개념을 이해한다.

- 한두 가지 기준에 따라 사물을 분류할 수 있다.

8) 5세

* 주요발달 특성

- 가위질이 능숙해진다.
- 성취나 경쟁적인 욕구가 충족된 일에 만족한다.
- 집단 활동에 대한 즐거움이 증가한다.
- 발음 체계가 완성되고 구어를 완전히 습득한다.

* 인지발달 특성

- 10~12가지 색깔을 맞춘다.
-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지적 행동은 대부분 직관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제한된다.
- 물건의 상대적인 크기를 잘 이해한다.

2. 인지발달을 위한 지도방안

1) 일반적인 지침

- ① 타고난 능력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개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여 무리한 요구를 피하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어린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어린이의 상징적 활동을 자극하고 격려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개념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생활 속에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한다.
- ③ 어린이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한다.
어린이의 질문이 비록 시시하거나 엉뚱할지라도 성실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답해 줌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계속 가지도록 격려한다.
- ④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적 자극을 제공한다.
나이에 맞는 놀이를 제공해 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2) 창의성 개발

- ①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개방적, 허용적 분위기가 바람직하다.
- ② 어린이들이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고 행동하도록 정서적 자극을 제공한다.
어린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질책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 ③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일상생활 용품들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혹은 엉뚱하게 활용되도록 격려한다.

- ④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남의 말에 진지한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어린이와 성인 모두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단기간을 통해 이를 수 없으며 창의적인 지능, 창의적인 태도, 창의적인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 창의성이란 인내심과 지구력 등의 성격 요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지적 놀이 지도

어린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놀이하면서 스스로 인지적 학습을 한다. 여러 가지 놀잇감과 흙, 나무 토막, 돌멩이, 나뭇잎 등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노는 동안 각 물체의 무게, 질감, 색깔, 크기 등 물리적 지식을 학습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적, 수리적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놀잇감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작 놀이, 쌓기놀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조작놀이

어린이가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사용해서 놀잇감을 맞추고, 분리하고, 재배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물을 다루는 놀이를 조작놀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3~5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조작놀이는 다음과 같다.

- 3세 어린이에게는 손잡이가 있거나 배경판에 조각 그림의 윤곽이 그려져 있는 퍼즐이 적합하다. 또한 눈과 손의 협응 및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동시에 옷 입기에 기본이 되는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등 손으로 조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4세 어린이에게는 단순한 조각 그림 맞추기뿐 아니라 도형 퍼즐, 숫자 퍼즐 등 특정 개념을 학습시킬 수 있는 퍼즐을 제공한다. 그밖에 숫자와 개수 맞추기 등 다양한 짝 맞추기와 색깔이나 모양,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준비한다.
- 5세가 되면 조금 어려운 수준의 조작 놀이도 가능해지는데, 숫자나 형태에 따라 바느질하기나 패턴에 따라 구슬에 끈 끼우기, 다양한 주사위 게임 도구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② 쌓기놀이

수학적 학습의 기초가 되는 형태, 크기, 길이, 높이, 넓이, 부피의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 블록 조각을 가지고 노는 가운데 부분과 전체의 관계, 분수 개념, 수의 많고 적음을 이해하게 된다.

- 2세경부터 쌓기 놀이가 가능하다. 가볍고 부드러운 커다란 스펀지 블록이나 손으로 집기에 용이하고 표면 처리가 잘된 나무 블록을 준비해 준다. 이 시기에는 양손으로 블록을 마주 눌러 끼우거나 단순히 돌려 넣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7~10cm크기의 플라스틱 끼우기 블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3세 어린이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등과 같이 기본 형태의 블록이나 종이 벽돌 블록을 제공해 준다. 레고와 같은 작은 끼우기 블록도 서서히 소개해 줄 수 있다.
- 4세 어린이는 널빤지, 원기둥과 같은 종류의 다양한 블록을 제공한다. 동물이나 사람 모형, 각종 자

동차를 준비해 주면 쌓기 놀이가 더욱 다양해진다.

- 5세가 되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등 인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실패나 도르래,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함께 준비해 준다.

3. 제언 및 결론

자료에서 연령에 따른 평균적인 발달 특성과 인지발달 특성을 제공하였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주요발달 특성을 중심으로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확인해야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학습을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학습에 거부감을 가진 아동일수록 놀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져야한다. 아동의 인지발달을 위해 아동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자극, 경험을 제공해야한다.

참고문헌

「최신교육학개론」 성태제, 강대중, 강이철 외 2명저, 학지사

「피아제 발달이론의 논리적 정당화와 교육적 함의」 은은숙, 경북대학교 대학원

미술로 아이와 소통하기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5년 06월 10일 ~ 07월 01일
장 소	미술심리지원실



나눔동행장애인종합복지관

미술로 아이와 소통하기

1. 소통

소통이란 사전적 의미로 의견이나 의사가 남에게 잘 통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파악 및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아이와 미술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 가정 안에서 아동과 더욱 친밀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아이들의 세계

아이의 눈높이는 어른들의 허벅지나 허리춤 혹은 기껏해야 가슴에 있다. 아이의 시각으로 보면 어른들이란 그 존재만으로도 매우 크고 위협적일 수 있다. 그런 어른이 손을 들어 올린다거나 눈을 치켜 뜬 채 굵고 강한 목소리로 다그치듯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그 순간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황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도 아이들은 어린과 다르다. 이러한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

사람들은 누구나 슬플 땐 슬퍼하고, 우울할 땐 우울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 몰래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면서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부모는 아이가 감정을 작은 수준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본적인 감정의 뿌리인 아이의 필요와 욕구를 읽어 그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 누가 뭘 잘못된 것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무엇이었던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만 우선적으로 전념한다. 자꾸 “왜?”를 물으면서 아이의 ‘문제’를 찾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의 욕구와 필요를 찾아내려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려는 것일 뿐이다.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감정을 서로 안전하게 표현하고 바라봐줄 수 있을 때 서로 신뢰나 유대감이 생긴다.

3) 화가난 감정

아이들은 화가 났을 때 아이 스스로 알았든 몰랐든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행동한다.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칭얼대거나 짜증을 내고 고집을 부린다. 자기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행동부터 하는 것이다. 아이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슬리게 하거나 상하게 하며 새로운 반응을 일으킨다. 상황이나 서로의 감정이 점점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어른들이 지금 자기 감정상태가 어떤지도 모를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데 있다. 화가 난 아이들의 행동에 참을성을 갖고 바람직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아이의 속마음을 알아주고 맺힌 감정을 풀어주려고 해도 감정이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어른들도 화가 나면 아이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변해서, 아이를 억압하고 혼내며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다.

화라는 감정이 불러오는 신체의 반응은 속이 부글거리는가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터질 것 같고, 머리가 아픈가 하면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듯하고, 손발이 부들 부들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눈에 서 한 줄기 광선이 나가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이와 같은 신체 반응들을 견디기 힘들어 한다. 혹시 견뎌 낸다고 해도 ‘화’가 난 감정을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고, 그것을 표출했다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소화하기 힘든 경험임에 틀림없지만, 어른들은 그 경험을 꼭꼭 씹어 아이에게 중요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일단 화가 날 땐 참지 말고 터트리게 한다. 화를 감추거나 다른 식으로 표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화를 내서 자기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편이 낫다. 화와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급적 빨리 인식하는 것, 화가 더 커지기 전에 주변이나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에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알리고,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화난 이유를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화라는 감정이 꼭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아이에게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예민한 아이일수록 불안감이 높다.

환경의 변화와 울타리의 부재가 불안을 낳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울타리 안에서도 자기 변화에 예민한 아이는 불안을 더욱 크게 느낀다. 예민한 아이들은 자극에도 민감하고 자신의 안과 밖의 변화를 빨리 지각하기 때문에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무시하고 부모의 기준에 따라 바라보면 ‘독특하고 고유하다’는 말 대신 ‘별나고 유난스럽다’고 말하게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세상에 소속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혹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기 쉽다.

불안이란 ‘변화에 대한 반응’이며, 고정되지 않거나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들을 불안정하게 관망하는 자세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자꾸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불안감이 더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시간은 어른보다 훨씬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빠른 변화를 일으키며 흘러간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이들은 나이 변화에 맞게 ‘발달’하고 ‘성장’해야한다.

아이가 불안해하면, 부모는 그 불안감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한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아이의 시각에서 보고 듣고 아이 곁에 있어줘야 한다. 특히 부모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자신이 일상 속에서 불안을 잘 감당해내고,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2. 안전하게 아이와 대화하기

1) 감정코칭

감정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인정하고 아이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되, 그 행동은 바람직한 방

향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정코칭 5단계

(1) 1단계 :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기

행동이 아니라 행동 이면의 감정을 포착하는 것이다.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동 이면의 감정을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2) 2단계 : 감정적 순간을 친밀감 조성의 기회로 삼기

감정을 보이는 순간에 하는 것이 좋고, 특히 강한 감정을 보일 때 감정코칭을 하기에 아주 좋은 순간이라고 한다. 격한 감정을 싸우거나 도망가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혼란감을 느끼고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강한 감정을 보일 때 아이를 돕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3) 3단계 : 아이의 감정 공감하고 경청하기

감정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그 감정을 수용하고, 경청하며 공감해주는 단계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혼란스럽고 복잡적이라고 해도 그 타당성을 인정한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그 자체로 아무런 판단 없이 타당성을 인정해 줄 때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대한 검사 역할이 아닌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의 타당성과 자연스러움을 함께 해주는 것이 감정코칭의 핵심이다.

(4) 4단계 :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아이가 보인 감정에 이름을 붙여 명료하게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감정에 대한 단어가 늘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복잡한 감정에 대해 아이가 나열한 감정의 단어들을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다.

(5) 5단계 :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 주기

감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부모가 행동을 제안하거나 지시하기보다 아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며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한계설정하기, 목표 확인하기, 해결책 찾아보기, 해결책 검토하기, 자녀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 감정코칭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시간에 쫓길 때이다. 출근 시간이라든가 바쁜 등하교 시간에는 시간에 쫓겨 감정을 충분히 수용, 경청하기 힘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감정은 내밀한 부분이므로 타인이 있는 경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할 수 있다. 두 명이상의 자녀가 격한 감정을 보일 경우에는 가장 격한 감정을 보이는 자녀와 우선 이야기 한 후 다른 자녀와 감정코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의 안정이 우선될 때는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모가 매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공감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때는 나-전달법으로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고 추후에 감정코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이다. 감정코칭은 아이의 감정을 진실되게 반응할 때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가능하다.

4) 나-전달법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표현법이다.

나-전달법 사용 시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요소

- (1)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 (2)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3)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나-전달법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 사실 :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 없는 서술(청자의 행동 서술)
- (2) 영향 :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 (3) 느낌 :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나의 감정, 느낌

사실 : 네가 거짓말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영향 : 그 말을 들으니

느낌 : 매우 슬프고 실망이 되는 구나

3. 제언 및 결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한다. 이러한 감정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다루어 아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감정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표현하기 어려울 때 그림을 통해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형상화 하며 아이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숙 외(2007). 나는 그림으로 아이와 대화한다. 인물과 사상사

김민정. “감정코칭 프로그램이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 감소와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2013.

가족과 함께 하는 스트레칭



팀 명	가족문화지원
일 시	2015년 10월 23일 - 10월 27일
작성자	특수체육교사 박지현
담당자	박지현



국립특수교육진흥원

☺ 스트레칭(stretching)이란?

스트레치(stretch)는 펴고 잡아당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칭(stretching)이란 신체 각 부분의 근육(筋肉)이나 건(腱)을 얼마 동안 펴거나 늘리는 것을 가리킨다.

가령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하품이나 기지개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칭으로 볼 수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위로 뻗치며 기지개를 했을 때의 상쾌함, 개운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스트레칭은 일반적으로 반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고 근육이나 건(腱)을 천천히 늘리는 정적(靜的) 스트레칭이다.

스트레칭은 구령에 맞추어 반동을 주면서 행하던 종래의 체조보다 에너지의 소비가 적으며, 안전하고 근육통의 예방과 그 회복에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칭을 적절히 실시하면 몸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스포츠 활동 시에 일어나는 상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로회복이나 기분이 상쾌해져서 심리적인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다.

☺ 스트레칭(stretching)효과성?

1.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육체를 더욱 편안하게 한다.
2. 보다 자유롭고 쉬운 동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정 능력을 도와준다.
3. 관절과 근육의 가동범위를 확장시킨다.
4. 근육의 부상을 막아준다.(스트레칭을 실시한 근육은 실시하지 않은 근육 보다 압박에 더욱 잘 저항한다.)
5. 활동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격렬한 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6. 신체 지각력을 발달시킨다.(스트레칭 할 때 근육에 집중하고 접촉하게 된다.)
7.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 스트레칭 종류

1. 동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은 앞·뒤 숙이기와 같은 율동적 등에서 나타나는 운동 유형이다.

동적 스트레칭의 가장 실질적인 이점 중의 하나는 박자나 구령에 맞추어 쉽게 수행될 수 있어 준비 운동시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며, 정적 스트레칭에 비하여 덜 지루하여 참여자의 흥미가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적 스트레칭은 근육과 이를 지지하는 결합조직이 너무 빠르게 신장될 경우 조직 내의 부적응이 초래될 수 있으며, 조직의 갑작스러 신장은 근의 파열 및 손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신경에 대하여 적응이 이루어지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정 효과적인 스트레칭이란 근 수축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가장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2. 정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은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으로써 동작을 약간 반복하든지 혹은 거의 반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정적, 혹은 완만한 스트레칭이 동적 스트레칭보다 더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근육이 잘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조금씩 사용하여 관절의 가동범위 내에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어, 근육이 약간 당긴다는 느낌이 올 때 멈추어 고정상태를 유지해주는 동작이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점까지 근육을 늘린 후 그대로 고정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동적 스트레칭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근육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강도를 감소시켜 반사적 수축을 줄여주고, 근육을 이완시켜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해준다.

유연성 향상을 위해 정적 스트레칭이 최적의 훈련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동적 스트레칭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가 적고, 조직 손상에 의한 통증이 거의 없으며, 근육통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적 스트레칭의 단점은 운동으로는 강도가 약하고, 다소 참여자에게 지루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또한 동적 운동을 거의 무시한 채 정적인 유연성만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좋은 스트레칭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을 혼합한 것이라고 한다.

☺ 올바른 스트레칭(stretching) 실시 방법

올바른 스트레칭은 근육에 집중한 주의력과 더불어 편안하고도 안전한 스트레칭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위, 아래로 반동을 주거나 고통스러운 정도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근육에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나 정확한 방법으로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하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동작이 더 쉬워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1.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편한 스트레칭에 10~30초 정도 시간(개인에 따라 조절)으로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2. 편한 스트레칭

- ① 근육에 부드러운 긴장을 느낄 정도의 편안한 자세를 10~30초가 유지한다.
- ② 근육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며, 근섬유 조직을 운동하기 좋도록 준비시킨다.

3. 호흡

- ① 호흡은 천천히 리듬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스트레칭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호흡이 불가능하다면, 편한 스트레칭이 될 수 없다.
- ③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는 숨을 멈추지 않는다.

4. 시간 헤아리기

- ① 마음속으로 초를 조용히 센다.(적당한 긴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② 호흡의 리듬에 맞춰 시간을 헤아린다면 편안한 호흡과 더불어 알맞은 시간을 느낄 수 있다.
- ③ 스트레칭에 익숙해진다면 느낌만으로도 시간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5.진전된 스트레칭

- ①편한 스트레칭 후 약간의 긴장감을 근육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10~30초 동안 유지한다.
- ②진전된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6.신장반사의 원리

- ①반동을 이용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어 부상을 예방하게 된다.
- ②반동이나 과도한 스트레칭은 근섬유 조직의 미세한 파열로 육체적 손상과 고통을 유발시킨다.
- ③이러한 손상은 근섬유에 상처섬유를 형성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근육의 탄력성을 상실시키고 근육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

☺유아·저학년을 위한 운동

부모가 서로 따뜻한 관계에 있고 주변 환경이 조용한 경우 아이들이 세상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에 덧붙여 어린이의 기본적인 감정적 욕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 책임감
- 부모,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 의한 개인적 가치의 인식 및 자아감
- 신체적·정신적 능력 발달을 위한 놀이 기회 등이 요구된다.

☺고학년을 위한 운동

고학년에게는 이완과 긴장과의 차이를 인식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신체적 활동은 많이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늘어뜨리고’, ‘강하게’, ‘부드럽게’, ‘단단하게’, ‘세게’ 등의 말을 한 뒤 ‘이것은 긴장이다’, ‘이것은 이완이다’하는 식으로 설명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이완을 시도한 즉시 이완할 수 있게 된다.

유아·저학년 스트레칭



☺췘매 끌어주기

1. 아이의 양손을 잡고 췘매를 끌 듯이 끌어준다.
2. 같은 자세에서 아이의 발목을 잡고 지그재그 원형으로 끈다.

☺막대 매달리기

1. 두 손으로 막대기를 집게 하고 막대를 들어올린다.
2. 지면에서 10cm 정도 떨어질 정도로 들어준다.

☺의자에서 뛰어내리기

1. 아이의 허리 높이 정도의 의자에 올라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 내린다.
2.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뛰어내리게 한다



☺몸 쪽쪽 펴기

1. 아이를 바로 눕힌 다음 양손은 각지를 끼고 팔과 다리를 15초간 쪽 편다.
2. 아이의 팔과 발목을 잡고 쪽 당긴다.

☺허리 뒤로 젖히기

1. 양 팔을 뒤로 하고 머리와 허리를 위로 들어 올린다.
2. 아이의 손을 당긴 후 15초간 정지한다.

☺들어올려 착지하기

1.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다가 내린다.
2. 양손을 살며시 떼어 스스로 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양이 자세

1. 팔과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며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엎드린다.
2. 숨을 들이마시며 턱을 천천히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30초 이상 자세를 유지한다.
3. 편안하게 동작을 유지한 다음 다시 숨을 내쉬며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무릎과 발끝의 모양이 팔(八)자 모양으로 휘어지지 않고 나란히 수평을 이루도록 신경쓴다.

☺ 나비 자세

1. 허리를 펴고 앉은 후 편안하게 호흡한다.
2. 양 발바닥을 붙인 후 발뒤꿈치를 최대한 몸 쪽 가까이 붙여 나비 모양을 만든다.
3.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양 무릎이 옆구리에 닿도록 모아본다.



☺ 비둘기 자세

1. 두 발 끝이 한 방향을 향하도록 앉는다.
2. 오른쪽 발끝을 천천히 잡아 오른팔 안쪽에 살포시 걸쳐 올린다.
3. 양손을 모으고, 시선은 다리와 반대인 왼쪽 천장을 바라본다.

☺ 초승달 자세

1. 두 발을 붙이고 하면 자녀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린다.
2.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다.
3.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무 자세처럼 두 손을 머리 위로 뻗는다.
4. 다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옆으로 몸을 기울인다.
5.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다 리 만 들 기

1.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의자 끝을 손으로 잡는다.
2. 의자에 힘을 가하지 않고 손을 걸치기만 한다.
3. 머리를 양팔 사이로 넣고 허리와 다리를 편다.



☺박수치기

1.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하고 등을 대고 앉는다.
2. 허리를 돌려서 상대방과 손뼉을 친다.
3. 양쪽을 반복한다.

※유의점: 양발은 고정시키고 허리만 돌린다, 시선은 손끝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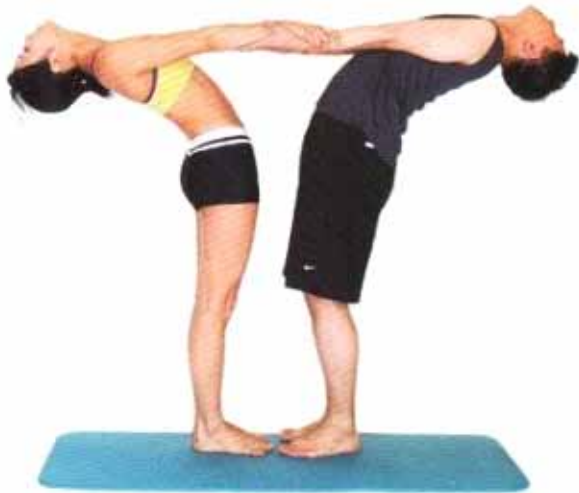


☺토끼잡기

1. 의자 끝에 뒤꿈치를 올려놓는다.

2. 다리를 펴고 손으로 발가락을 잡는다.
3. 발가락은 토끼가 되고 손은 호랑이가 된다.

고학년·성인 스트레칭



☺ 등, 어깨 스트레칭

1. 파트너와 마주보고 선다.
 2. 서로의 발가락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서로 잡아준다.
 3. 호흡을 맞추면서 서서히 상체를 뒤로 젖혀준다.
 4.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조절하면서 15~20초 정지한다.
 5. 호흡을 맞추며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온다.
- ※유의점: 상대방과 힘을 적절히 조절하여 한 사람이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어깨, 신체긴장완화 스트레칭

1. 파트너와 마주보고 선다.
2. 서로의 어깨 윗부분에 양손을 얹어준다.
3. 서서히 뒤로 물러나면서 상체를 숙여준다.

- 4.머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지긋이 눌러 준 후 15~20초 정지한다.
 - 5.호흡을 맞추면서 원상태로 돌아온다.
- ※유의점:서로의 손이 안전성을 위해 어깨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옆구리 유연성 향상 스트레칭

- 1.파트너와 나란히 바르게 선다.
 - 2.서로의 안쪽 다리는 붙이고 양손은 위, 아래로 잡아주며 다리는 어깨넓이 두배정로 벌려준다.
 - 3.바깥쪽에 지탱한 다리를 구부리면서 양손에 힘을 실어 서로 잡아당긴 후 15~20초 정지한다.
- ※유의점:한 쪽으로 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손과 발의 위치를 조절한다.



☺척추, 고관절 유연성 향상 스트레칭

- 1.파트너가 서 있는 앞쪽 방향에서 먼저 실시할 사람이 파트너 앞으로 등을 지고 선다.
- 2.다리는 어깨넓이 만큼 고정을 시키고 한쪽 방향으로 몸을 비틀어주어 상대방의 양손을 잡는다.
- 3.서로가 적당히 힘을 실어서 실시하는 사람의 척추가 최대한 트위스트 되도록 한다.

※유의점:놓여진 발의 위치와 발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한다.



☺어깨 유연성 향상 스트레칭

- 1.스트레칭을 먼저 실시하는 사람이 양손을 허리에 얹는다.
- 2.보조자가 시행자의 뒤에 서서 구부린 팔 안쪽으로 양손을 감싸 안고 각지를 끼워 등 위에 손을 댄다.
- 3.보조자가 팔을 펴 주면서 시행자의 팔꿈치가 최대한 뒤로 젖혀지게 한다.

※유의점:보조자가 지나치게 누르면 시행자의 어깨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고관절 유연성 향상 스트레칭

- 1.파트너와 발바닥을 마주치게 해서 다리를 최대한 벌린다.
- 2.서로의 손목을 잡고 호흡을 맞춰서 보조자가 시행자의 상체를 당겨준다.

※유의점:발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고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게 한다.



☺후면 대퇴부 유연성 향상 스트레칭

1. 상대방과 마주보고 앉아 서로의 발바닥을 마주치게 한다.
 2. 보조자는 무릎을 구부려 주고 등을 둥그랗게 한다.
 3. 서로의 손목을 잡고 호흡을 맞추어 보조자가 시행자의 상체를 당겨준다.
- ※유의점:정확하게 서로의 발바닥을 붙인다. 시행자의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한다.



☺척추 교정, 고관절의 탄력성과 유연성 향상 스트레칭

1. 시행자는 바닥에 바르게 눕는다.
 2. 양손은 양옆으로 뻗어주고 한쪽다리를 구부려서 발이 반대편 무릎 위에 놓여지게 된다.
 3. 구부린 다리를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준다.
 4. 보조자는 시행자에게 다가와서 무릎 윗부분과 어깨를 잡고 지긋이 눌러준다.
- ※유의점:시행자의 밑에 퍼진 다리가 이동되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한다.

성인기 장애자녀의 자립을 위한 부모역할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15. 10. 12. 19:00~21:00
장 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기 장애자녀의 자립을 위한 부모 역할

장애자녀 성인기 이후의 자립생활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위기가 악화될지 완화될지,
사람이 인간화 될지 비인간화 될지는 전적으로 나의 반응에 달려있다.

- 피테 -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계속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전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무슨 뜻일지를 전혀 모르면서 새로운 귀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를 듣고 내가 변할 의도가 있을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캐서린

자립생활은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인지적, 행동적 문제나 장애상태에 따른 사회적 관계 형성의 문제, 가정의 지나친 우려 및 장애인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기를 앞둔 장애청소년의 자립생활 역량축진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장애자녀에게 표현, 선택 및 문제해결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및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생애 초반에서부터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원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립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자립생활의 가능 여부를 논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장애상태나 특성,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원 서비스 제공이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훈련, 보조기구, 이동수단 및 활동보조, 주거, 소득, 권익옹호 등입니다.

자립생활은 신체장애인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초기 자립생활 운동이 소아마비나 척수장애를 가진 신체장애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후 자립생활센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자립생활운동도 신체장애 당사자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자립생활은 신체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립생활이 장애인의 자립과 선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의 제한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은 사회경제적인 독립이나 가족으로 독립해서 주거지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일상생활상의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립이라고 하면 돈을 벌어야 하고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금전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남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가지고 있으면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이므로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도 자립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자립생활은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 가능성을 존중하고, 개인마다 가진 자립생활의 다양한 수준과 방식들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적능력이나 사회성에 제한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합니다. 최근 '상대적 자립(relative independence)'이란 개념 사용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자립(relative independence)

완전한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은 어렵다하더라도 이전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자립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피플퍼스트(people first) :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의 뿌리는 발달장애인도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선택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뉴리에(Nirje)의 주장에 따라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노말라이제이션이념과 함께 유럽과 북미로 파급되어 1973년 영국에서 "Our Life"라는 집회가 개최되었고 1974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주도의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어느 발달장애인이 "I wanna be known that disability is second, people is first"라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피플퍼스트'라는 말이 붙여지며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같은 해 오리건주에서 단체가 결성된 후 미국 전역의 발달장애인 권리주장 협회로 발전하여 미국에서만 800개 이상의 자기 옹호 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날 피플퍼스트와 자기 옹호 운동은 약43개국에서 17,000명이 넘게 참여하는 국제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3).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왜 중요한가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체계 구축을 추구하는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이므로 비록 자기결정과 선택능력에 제한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환경에서 살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자기표현을 통해 삶을 즐기고 세상과 소통해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립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자립생활은 성인이 되어서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립생활역량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성인기의 발달장애인이 중증장애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의 선택과 결정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제한된 지적능력과 사회성 등의 이유 때문에 스스로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경험을 제재당하고 결핍되기가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만드는 당사자가 양육자인 부모와 가족이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의 장애상태나 위험요소를 핑계로 선택과 결정의 경험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부터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지를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권익옹호, 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활동보조서비스(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후견인, 동료상담, 의사소통 기기 제공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촘촘한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장애관은 자녀의 자립생활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언행과 태도는 학교로부터의 공식적인 교육보다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와 상관없이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모습에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고 싶어 한다면 자녀는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게 됨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자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장애로 인해 움츠러들거나 주눅 들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 질문할 때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모든 사람이 독특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고, 자녀가 자신의 장애로 인한 제한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자녀가 자신에 대하여 갖는 자신감은 자녀의 자기결정 향상뿐만 아니라 자립생활능력을 축적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를 잊어버리자.

아이의 장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니다. 장애를 잊고 아이를 보면 아이가 보인다.

장애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아이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장애를 잊어버리고 아이의 참 모습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장애를 잊자는 것은 장애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장애라는 굴레에 갇혀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관점을 버리자는 것이다. 어차피 아이의 장애는 떼려야 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정을 하려거든 과감하게 인정해야 한다. 미련을 가지는 생각은 조금만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그 적응의 정도가 향상돼 가는 것인 만큼 그런 긍정의 변화를 어떻게 더 키워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장애라는 굴레 안에서 아이를 보면 안 되는 것과 못하는 것들만 보인다. 하지만 장애라는 굴레에서 나와 장애를 바라보면 아이의 잘하는 면과 아이가 가지는 호기심과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소통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 긍정과 즐거움이 커지면서 즐거움을 만들어 가는 다양함에 대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녀의 자립생활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기대는 장애인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자녀의 자존감과 자립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기대감을 계속해서 표현한다면 자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높은 독립심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것

- 자녀의 약점보다 능력과 장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세요.
-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세요.
- 현실적인 기대를 하세요.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아이의 생각이 깊고, 넓어지게, 표현을 다양하게, 성취감을 쌓아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지켜보고, 만들어가는 역할이 부모의 몫이다. 아이에게 무한신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전해주며 장애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장애 아이’가 그냥 ‘아이’가 될 것이다. 거치적거리는 꼬리표를 달아준 것도 부모이고 그것을 떼 줄 사람도 부모다. 부모가 아이의 행복을 제한한다면 아이는 평생 그런 인식과 환경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누구나 꿈을 꾸다. 그것이 상상의 끝판이라 해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 준 적은 있을까? 아이의 삶을 아이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준 적은 있을까? 부모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는 아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고, 보조해 주는 것이 주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필요할까?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에서 가장 우선이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서툴고, 허술하고, 더디고, 힘들어해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 나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옷을 입고, 정리를 하는 모든 것들이 부모의 눈높이로 보고 정리를 해 내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단지 좀 느리게 하는 것뿐이야. 나는 기다려 줄 수 있어.’하는 마음을 전하려 노력해야 한다. 개입하고 포기하는 순간 아이는 한 가지를 잃게 된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먼저 내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 갈 수 있는 경험치를 높여 갈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부모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 혹은 필요한 것, 자신의 감정을 남들에게 표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와 집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교육과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유년기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매일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법, 질문하는 법, 대화를 적절하게 이끌어가고 끝내는 법을 시범보임으로써 올바른 대화 자세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 자녀가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어투나 자녀에게 무심코 내뱉는 말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격적이거나 신경질적인 어투로 말을 한다면 자녀 또한 자신이 들은 대화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냥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친구들 혹은 어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욕심일 것입니다.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것

-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자녀가 이메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격려해주세요.
-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 자녀에게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 대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 하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막무가내로 떼를 쓰며 거부하고 있다고 해 보자. 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손목을 잡아끌며 큰소리가 나고,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면서 매를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런 부모의 모습이 솔직한 자기감정일까? 그것은 욕심에 의한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어른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그것이 방해(?)를 받게 된 사실에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으며, 혹은 정해진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아이의 행동이 그것을 방해 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감정을 드러내자는 것은 표현을 하자는 것이다. 떼를 쓰고 있으면 왜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 되짚어 물어

보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긍정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결국 왜 아이가 화를 내고 있는지 알게 된다.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눈 앞의 상황만 보고 가지 감정에 휩싸인 결과가 화를 내는 것이다.

‘왜 그러는데’, ‘뭐 할까’, ‘어떻게 해 줄까’ 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감정을 표현하는 시작이다. 또한 ‘그러면 아빠(엄마)가 마음이 아파요’, ‘때리면 아프잖아’, ‘이것 좀 해 주세요’, ‘잘했어 또 해볼까?’ 하는 긍정의 표현으로 대한다면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표현을 하자는 것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상대의 감성을 소리와 표정과 행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자녀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사회참여는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을까?

성공한 사회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사회성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동아리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도록 격려해줌으로써 자녀의 사회참여 폭은 넓어지고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것

- 자녀와 함께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세요.
- 자녀가 즐기는 활동을 찾아주세요.
- 가족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세요.
- 자녀와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세요.
- 자녀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자녀는 언젠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여 이루는 가정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하는 가정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낯선 사람들과 이루는 가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을 띄든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각각은 행복한 가족생활을 꾸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자녀가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역할, 협력 등과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것

- 남녀 간의 에티켓을 가르치세요.
- 부모가 하는 역할을 보여주세요.
-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녀가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지원체계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지원망과 같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당신 자녀를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녀가 지역사회 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나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것

- 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에 자녀를 소개하세요.
-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 친구, 이웃들에게 자녀에 특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자녀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달장애인은 성장해가면서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결정하기, 자기성찰,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줌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경우 자존감과 자신감은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감의 중요성과 책임감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모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지고 완수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것

- 자녀가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가르치세요.
- 자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집안일을 맡겨주세요.
- 때로는 즐겁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말해주세요.
-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최00 아버님의 글 중 일부 인용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 이해 팜플릿 중 일부 인용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에서 인용

2015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5년 1월 15일 (목) 저녁 7시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열린 일터

I. 2015년 열린일터 연간 사업 일정

날 짜		내 용
1월	5일	시무식
2월	-	동아리활동 시작(2주, 4주)
3월	27일	1차 등산활동
4월	20일	데이캠프
5월	5일	비루고개축제
	29일	가정의 달 행사(성모성월 미사)
6월	12일	2차 등산활동
	25일	현장견학
7월	27일-31일	하계휴가(예정)
8월	-	-
9월	11일	3차 등산활동
	18일	휠체어마라톤대회
10월	15일	소방종합훈련
	22일-23일	가을여행
	-	독감예방접종
11월	6일	4차 등산활동
12월	16일	남동송년예술제
	26일	가족송년회
	29일 -1월 2일	동계휴가(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I. 2015년 일일 시간표

오전	9시 ~ 10시 20분	조회 / 프로그램 및 작업
	10시 20분 ~ 10시 40분	쉬는 시간
	10시 40분 ~ 11시 50분	프로그램 및 작업
오후	11시 50분 ~ 1시	점심시간
	1시 ~ 2시 20분	프로그램 및 작업
	2시 20분 ~ 2시 40분	쉬는 시간
	2시 40분 ~ 4시	프로그램 및 작업
	4시 ~ 4시 10분	쉬는 시간
	4시 10분 ~ 5시	프로그램 및 작업
	5시 ~ 5시 30분	청소 및 종례

III. 2015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김형범, 김상준, 김영희, 강웅혁 심재홍, 김훈범, 이해민, 남빛, 김소열, 임선영 (10명)	이선영, 조상환, 홍미리, 진은혜, 문은선 이상복, 김성준, 백광호, 김동하, 한운철, 강병철, 조준희, 양세정, 하은미, 박찬혁, 최성욱, 황정하, 조국태, 하동현, 황지선, 김민아 (21명)

IV. 2015년 프로그램 참여 이용인 명단

프로그램명		이용인 명단
성교육	근로자	근로자 전체
	훈련생	훈련생 전체
사회기술 훈련	1반	황정하, 홍미리, 김민아, 김동하 이상복, 조준희, 하동현
	2반	양세정, 진은혜, 문은선, 박찬혁, 최성욱, 백광호, 조상환
	3반	하은미, 이선영, 황지선, 김성준, 한운철, 강병철, 조국태
운동	댄스교실	김동하, 한운철, 이상복, 조준희, 황지선, 김민아, 이선영, 문은선, 박찬혁, 진은혜
컴퓨터 교육		황지선, 하동현, 김민아, 홍미리, 조상환
공예훈련		훈련생 중에 평가를 통해 9명 선정
자판기 관리	근로자	김소열, 임선영
	훈련생	한운철, 황지선
미술 치료	근로자	남빛, 김소열, 심재홍
	훈련생	조준희, 홍미리, 최성욱
근로자 기본교육		근로자 전체
지역사회적응훈련 인권교육, 안전교육 건강교육		근로자 및 훈련생 전체
동아리활동		신청자

V. 보호고용 운영지침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 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 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 (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인들 중 6개월 이상 이용하였으며 ‘근로자 선정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10명을 선정한다.

제6조 (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제7조 (근로 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인과 시설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 (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 4 장 복 무

제9조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란,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일시)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한다. [개정 2015.1.1]
3.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5.1.1]

제11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

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2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2조의 1 (대체공휴일) [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3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 직원교육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개정 2015.1.1]

제14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

제15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개정 2015.1.1]
4. 출산 : 본인은 출산전후 (90일, 단 산 후 45일 이상 보장), 배우자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휴가, 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시행 2013. 2. 2)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 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1.1]
5.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6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6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17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8조 (임금지급 기준 및 방법)

1. 근로자는 월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 [개정 2014.1.1]
2.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5.1.1]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4. 근로자가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신설 2014.1.1]

제 6 장 종 결

제19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 종결

-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근로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3.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이용인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4)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 [신설 2015.1.1]

5)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4. 계약종결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 되지 않았을 때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0조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1조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부모회의

제22조 (부모회의) [신설 2013.1.1]

1. 보호고용 근로자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VI.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의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차 보호고용 등으로 전이되어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2.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훈련생 정의)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5세 이하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진단 및 재활계획회의 결과 신규 이용이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2.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작업활동프로그램 대상으로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제 2 장 서비스 과정

제5조 (훈련생 선정 및 과정)

1. 훈련생 선정을 위한 이용인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결원 시 접수된 순서대로 진단한다.
2. 초기면접과 직업평가 후 재활계획회의를 실시하여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평가 기간은 일주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

3. 타기관의 동일한 진단(6개월 이내)을 통해 의뢰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을 결정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1. 이용기간이 만료하여 이미 퇴소한 자
 2.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소자 중 이용기간이 5년 초과된 자
 3.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소자 중 3년 훈련 후 보호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한 자
- 단, 3년의 훈련기간 연장자는 훈련을 지속하고, 그 후 보호고용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7조 (훈련계약)

훈련생으로 입소가 확정된 훈련생과 시설장은 훈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훈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년 중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개정 2015.1.1]

제8조 (구비서류) 열린일터 훈련생으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용인의 권리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복지카드 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제9조 (훈련기간)

3년간 훈련생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훈련 후 평가를 통해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내용 및 훈련비)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장차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

- 1)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2)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3)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4)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5) 통근훈련 : 지역사회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6)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7)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2. 훈련비

- 1) 매월 정액의 훈련비는 없으나, 훈련 내용에 따라 실비를 납부할 수 있다.
- 2) 중식비는 매월 5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련수당 지급)

1. 훈련생은 월1회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개정 2014.1.1]
2. 훈련수당은 훈련계약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90% 미만 출근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
3. 훈련생이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훈련수당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신설 2014.1.1]

제 3 장 복 무

제12조 (훈련생의 책임)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훈련생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란,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훈련일시)

1. 훈련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한다. [개정 2015.1.1]

3. 휴게시간은 훈련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5.1.1]

제14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훈련생이 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
2. 조퇴라 함은 훈련생이 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6.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기관 이용을 위한 현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현장평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종결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현장평가 기간은 회당 최대 2주로 하고, 3회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5.1.1]

제15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5조의 1 (대체공휴일) [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6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 직원교육으로 인해 훈련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5.1.1]

제17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

제18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개정 2015.1.1]
4. 출산 : 본인은 출산전후 (90일, 단 산 후 45일 이상 보장), 배우자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휴가, 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시행 2013. 2. 2)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1.1]
5.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9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6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20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21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훈련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기간 만료
훈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강제 종결
 -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4.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훈련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훈련생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4)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 [신설 2015.1.1]

5)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제22조 (훈련개시, 종결, 통보)

훈련 담당자는 훈련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훈련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대기자

제23조 (대기자)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가 유예된 대상을 '대기자'로 칭한다.

1. 현 서비스 대상자가 정원에 달했을 때

2. 특수학교 및 학급에 재학 중일 경우 (단, 고3에 한해 대기할 수 있다.)

3. 본 시설 이용 중 특별한 사유(이용인 및 보호자의 입원 혹은 수술, 보호자의 출산 등)에 의해 2개월 이상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종결을 하고 우선대기(1순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훈련생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부모회의

제25조 (부모회의) [신설 2013.1.1]

1.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향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5년 11월 5일 (목) 저녁 7시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열린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618호, 2014.5.20. 제정]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 · 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 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함.
-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새롭게 설치 운영되는 기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 내 운영위원회,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중증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전문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새로운 서비스

발달장애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 비용 지원, 재활치료서비스를 성인기까지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가, 문화, 체육 및 예술활동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등

■ 차별화된 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별도의 독립적 전달체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환경 구현 등

- 1)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

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 지원대상을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함.(안 제2조)

3)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찰 · 경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17조까지)

* 성년후견제도 :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줄 사람을 법원이 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 문하게 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4)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제공, 평생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재활 및 발달 지원

①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함.

②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함.

③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지정할 수 있음.

④ 자해 · 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 문화 · 예술 · 여가 · 체육 활동 등 지원

①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각종 행사 등을 관람, 참여, 향유 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②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③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5)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비장애 형제·자매로서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이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

6)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조사·보호조치, 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 33조 및 제34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 ②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 ③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 ④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 ⑥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 ⑦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②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③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④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⑤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⑥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⑦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에 대한 감독
- ⑧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 ⑨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

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 지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5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 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대상·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

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 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2618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5년 2 월 13일 16:00-17:00
담 당	김 은 숙
장 소	별관 3층 프로그램실



나눔동행에민족함복기관

2015년도 늘푸른동산 사업 소개 및 운영 방침

1. 목적

주간보호사업은 중증의 장애인들에 대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기능의 손실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부모들에게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애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1) 프로그램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7:00까지 진행(송영서비스 시간 제외)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09:00~13:00(토요공예체험) 진행

2) 세부프로그램

- 이용인 정규프로그램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09:30	내관지도				
09:30-10:00	조회 및 스트레칭				
10:00-10:45	스트레칭	*컴퓨터교육 /지역사회 시설이용	*미술활동	환경미화활동 /인권교육 (종이접기) /*생태교육	*컴퓨터교육
10:45-11:30	성교육	음악활동 /지역사회 시설이용		*방송댄스 (10:30시작)	
11:30-13:00	점심 식사 및 양치지도				
13:00-14:00	인지학습	*요가	통합활동	*헬스	*요가
14:00-15:00	보드게임 /요리활동	예절교육 /*클럽활동		생활미용관리	*농장체험/ 수중운동
15:00-15:30		간식시간		간식시간	
15:30-16:00	간식시간 및 자유시간	청소시간 및 자유시간	간식시간 및 자유시간	청소시간 및 자유시간	간식시간
16:00-16:40					
16:40-17:00	종 례				

1) *표시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활동임

2) 클럽활동은 도예체험, 비즈공예, 미용, 냅킨아트로 이용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여 진행됨

3) 2015년도 공동모금회지원사업

“생태교육”-푸르미2(푸르른 변화를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들!)

- ① 생태교육 : 환경운동가 통한 이론실습 교육
- ② 생태캠프 : 일일캠프
- ③ 생태기관 견학
- ④ 환경미화 활동

4) 월 1회 : 지역사회시설이용 실시

5) 년 3회 : 분기별로 각종행사(봄나들이, 일일캠프, 남동송년예술제)

6) 년 6회 : 체지방측정(4회), 독감예방접종(1회), 건강진단(1회)

7) 년 4회 : 구강교육, 비만교육, 위생교육(2)

8) 년 2회 : 상하반기 소방교육

9) 주 1회 :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활동

10) 년 4회 : 상하반기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보호자 욕구조사

11) 년 2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지역축제 참여

• 이용인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부모상담- 수시

·부모교육- 년 4회 실시

·부모회 모임- 년 4회 실시

·가족여행- 10월중(1박 2일)

·가족송년모임 실시 - 12월 중 실시되며, 가족 모두 참석하여 본 센터 사업보고 및 시상식 진행

제 6 장 부모회

제16조 (부모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 모임을 부모회라 칭한다.

제17조 (부모회 및 부모교육)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개시한 날부터 이용인의 부모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실시하는 부모모임이나 부모교육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이용료

(1) 적응기간 이용인

- 식대는 별도로 날일 구입하여 사용 1일 : 2,500원
- 적응기간에는 정규이용인의 월이용료 기준으로 날일 계산하여 납입

(2) 정규 이용인

- 이용료는 130,000원이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입금
(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세대의 경우 이용료는 50% 감면)

(3) 식대는 월 단위로 50,000원 금액을 현금을 납입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5일까지 입금

(4) 2015년도 이용료 산출근거 내역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사회 적응 훈련 활동비	방송댄스 이용료	8,500원	월4회×2,125원
	클럽활동 재료비 및 강사료	20,000원	월2회×10,000원
	종이접기 재료비	5,000원	월4회×1,250원
	수영 사용료	2,000원	월2회×1,000원
	통합활동비	10,000원	
	토요공예체험비	15,000원	월1회×15,000원
	지역사회시설이용비	10,000원	월1회×10,000원
	기타활동교구 교재비 (펜글씨, 음악활동, 가사지도, 생활미용관리, 대화기술훈련등)	7,750원	월1회×7,750원
	소계	78,250원	
행사 활동비	나들이	16,000원	2회×100,000원≒12
	송년예술제	5,000원	1회×30,000원≒12
	가족송년모임	10,750원	1회×129,000원≒12
	소계	31,750원	
생계비	간식비	20,000원	4주×5,000원
	소계	20,000원	
	기타운영비	-	
	총계	130,000원	

4) 환불

제14조 (환불)

1. 이용인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 중단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2. 운영 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상황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을 정한다. 즉, 15일 이전 종결 시에는 이용료 및 식대는 50%를 지급하고 15일 이후 종결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이용기간 : 3년(서비스 계약서 상단에 이용기간 날짜 명시되어 있음)

3. 서비스 종결 내용

운영규정 중 제 9조 <서비스 종결>

본 주간보호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인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포기 - 이용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이용인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대상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무단으로 연속 2회 이상 결석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3.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정 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이용인의 장애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무단으로 서비스에 연 5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 (4)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인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5) 일시종결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단, 일시종결은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화재)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국한하며 1개월이 지날경우 자동종결 된다.

2015년 2차 늘푸른동산 부모교육 -장애자녀의 성교육 지도방법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5년 5 월 18일
담 당	김 은 속
장 소	서면자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자녀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 성교육의 이해와 방법)

본 자료는 지적자폐성 장애아동 대상으로 성교육 지도방법이 쓰여져 있으나, 사전 준비 시 본 센터 성인 장애인 지도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 자료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장애인 성교육의 필요성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비장애 아동·청소년과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면 장애 특성과 발달상 특별한 감각통합의 문제와 낮은 지능으로 인한 미숙한 긴장 해소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고, 도리어 교육을 잘못 인지하여 유사 성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은 비장애 아동·청소년보다도 더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입장임을 고려하여 사회 성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로 인한 제약된 생활환경으로 성교육의 기회마저 부족한 실정에서 성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도 단체나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비장애인처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적·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많은 지도자와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들은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불안함과 불안전함에 대해 고민하여 성교육 자체를 거부하거나 단순하게 저연령의 비장애 수준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거나, 교육 대신 일방적 강압과 심지어 최면적인 지도로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의 불안전감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적·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하여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우리 사회와 일반 사람들의 결핍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생애 전반에 걸친 성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고 성장 발달에 따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성의 인지를 도와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특성과 교육수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함을 통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소통하며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행복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명예를 추구하려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Maslow) 등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신체적, 지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의 생애주기를 겪으며 각각의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이 비장애인들보다 많이 필요하다. 사회성 교육(사회적응)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성교육이다.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성적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행동을 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이번 교육 목표이다.

장애특성상 보호자(부모, 생활교사 등)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 표현을 한다. 가족,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또래친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가족, 보호자 이외의 관계에 따른 적절한 친밀감 표현법을 익히지 못하면 특히, 친밀감이 성행동이나 성폭력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더욱이 성에대한 장애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친밀감으로 다가가 성폭력 가해를 하여도 성폭력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생활연령에 맞게 교육받지 못하고 인지연령에 따라 유아적으로 지도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았다. 따라서 장애학생들 각각에 맞는 적절한 성행동지도를 비롯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진행되어야한다.

II. 장애인의 성행동 지도 사례

사례1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지적장애 남학생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는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며 지냅니다. 그럴 때는 무료해서 그런지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라 그런지 요즘은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시간에도 성기를 만진다고 합니다. 담당선생님이 주의를 준 뒤에는 선생님 앞에서 성기를 만지는 행동은 줄었다고 하는데 안보는 곳에서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춘기의 자연스런 행동이니 너무 혼내지 말라고 하는데 장애아이다 보니 더 걱정이 됩니다.



자위에는 여러 원인 (무료함, 스트레스, 아토피, 모방, 성적호기심 등)이 있겠지요. 원인에 따라 지도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초등 4학년이라면 사춘기가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원인은 달라도 성기를 자극하면서 성적 자극으로 옮겨 가겠지요. 그러므로 사춘기 자위지도 방식으로 지도하셔야합니다.

지나친 자위행동의 지도 방법

■ 남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한다.

자위행위를 해도 좋은 장소를 결정하여, 그 이외 장소에서는 부끄럽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방이나 화장실(개인 화장실)과 같은 사적 장소에서 하며 문을 닫고(장애정도에 따라 문을 잠그지 않고 닫고 사용한다. 다른 사람은 노크하기) 하도록 알려줍니다.

■ 청결을 유지한다.

자위행위에 있어서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거나 불결한 장소에서 하거나 하면 감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생식기를 청결히 하는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고 사용한 화장지는 휴지통에 잘 싸서 버리도록 합니다. 자위행위 때 속옷, 이불 등을 더럽히지 않도록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나 남자보호자가 뒤처리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목욕할 때 생식기를 깨끗이 씻는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생식기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손톱을 자른다. 배변 후에는 항문을 깨끗하게 닦는다.)

■ 츠리닝과 같은 바지를 입히지 않는다.

츠리닝은 바지에 손을 집어넣고 수시로 음경을 만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음으로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자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옷을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다면 츠리닝 보다는 지퍼, 허리띠가 있는 바지를 입히도록 합니다. 이는 성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운동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어려서부터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이나 잘하는 운동을 길러줍니다. 또 운동과 같은 레저 활동은 과도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일깨워 줍니다. 흥미가 있는 수업이나 등산, 수영, 페인팅, 찰흙놀이, 요리활동, 콜라주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고 오감 만족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 TV시청 시에는 누워서 보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본다.

또한 눈치를 보며 선생님이나 친구들 몰래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인지 보셔야합니다.

① 눈치를 보며 하는 행동 : 개별 성교육을 통해 자기 방에서만 해야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면 기분 나빠하고 창피한 것에 대한 느낌과 성행동 지도를 하시고 부적절한 자위행동이 나타나면 바로 제지하는 것을 반복해야겠지요. 부모님께도 자기 방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다른 장소에서는 제지하도록 하셔야합니다.

②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 : 자위행동이 나타날 때 마다 ‘창피하다’ 는 것을 알려주고 양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지도를 위해서는 혼자 방치되는 시간이 없어야겠지요. 학교 친구들도 자위를 한다고 해서 성적인 말투나 비웃지 말고 편안한 말투(일상어)로 창피한 행동이라 안 본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후 관심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자기 방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다른 장소에서는 제지하도록 하셔야합니다.

다.

사례2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자폐아입니다.

6학년이지만 등치도 또래보다 작고, 인지도 34살 정도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아 하는 사람을 보면 안아주고 뽀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를 보면 먼저 안아주고 볼에다 뽀뽀를 합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이 변태라고 놀리고 옆에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친구에게는 뽀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딸아이라도 알았다고 약속하지만 학교에 가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행동인데 반 아이들한테 변태라고 놀림을 받는 것도 속상하고 커서도 계속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여도 장애인이 또래 친구를 사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대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을 익히고 이성애에 대한 감정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아동들끼리 놀이가 어려우면 지도자(보호자, 도우미)가 놀이에 함께 참여하여 놀면서 게임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비장애 아이들과는 신체 접촉 없이 말로 인사하지만, 장애 아이에게는 안아주기부터 한다면 학교나 외부에 나갔을 때에 그아이는 좋은 사람과는 무조건 안으려 듭니다. 이런 때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집에서(거실) 아이가 돌아오면 말을 많이 시키고 “이러 이러해서 엄마는 너를 안아주고 싶구나. 안아도 되겠니?” 라고 하며 신체 접촉을 해야 합니다. 장소와 사람에 따라 친밀감 표현과 신체 접촉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래친구들과의 대화, 놀이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적이고 직접적인 스킨십을 배제하고 게임을 통한 규칙, 약속에 의한 생활연령과 친구관계에 맞는 자연스런 스킨십을 배워야합니다. 이런 놀이, 여가문화 없이 이성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성교제를 할 때는 어디까지 스킨십을 해야 하고 언제 만나야하는지 등의 교육·상담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반 아이들에게도 장애친구에게 적절한 인사와 대화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 친구가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려고하면 ‘뽀뽀하는 건 싫어, (손을 흔들며) 안녕, 하고 인사하자.’라고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거절하는 것과 친밀감 표현하는 방식을 알려 주어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적절한 표현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사례3



고2 남학생입니다. 어린 시절이 좋았는지, 시계가 거꾸로 갔으면 좋겠다. 중학생이 되려면..... 등등의 질문을 자주합니다. 특히 유모차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교실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엄어줘!" 가 있는데, 한동안은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한번은 선생님에게 "엄어줘" 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래~ 엄어 줄게!" 하고 돌아서서 엄이라고 했더니, 발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살펴보니, 퇴행이라기보다는 발기된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친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 생활연령에 맞는 친밀감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젠 너무 커서 엄을수가 없어. 힘들어. 어디 얼굴 좀 보자. 우리 뭐할까?"하며 팔을 가볍게 두드려 주거나 손을 잡아주며 친밀감을 표현하며 대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4



중학생인데 혼자 목욕을 하고 나면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거실에서 갈아입습니다. 난 그저 어린 아들로 보이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창피하다고 합니다. 오빠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딸에게 알려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옷은 어디서 벗어야 하나? 목욕할 때 옷을 벗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무데서나 벗을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목욕탕, 화장실, 자기 방, 탈의실 등에서 벗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빨래통에 대한 개념** : 목욕을 할 때 대부분 그냥 획 던져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수영장 등에 가셔도 같은 행동을 하게 되므로 옷을 예쁘게 개서 옷 놓는 곳(또는 바구니)에 놓아두는 습관을 갖도록 목욕할 때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도록 합니다.

사춘기를 준비하는 초등학생이 되면 목욕을 스스로 하도록 지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이 함께 목욕하기 보다는 부모님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옷은 거실(공공장소)에 갈아입지 말고 욕실이나 자기방에서 갈아입도록 지도하고 목욕하며 자연스런 스킨십을 원한다면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이용하여 장소와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5



초등 6학년 남학생들이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같은 반 특수학급(지적장애 2급) 남학생의 바지를 내리게 하고 고추(음경)를 만지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진 것도 아니고 장난친 것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건 잘못했는데 자기만 본 것이고 인터넷에 올릴 생각은 없다고 또 장난이라고 하며 잘 못했다고만 합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은 지금도 친구들이 놀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교육을 시작해야 하나요?

➡ 뉴스에 나오는 위험한 상황만을 성폭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 적·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다 성폭력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사회의를 통해 가해학생 중 주동한 학생에 대한 징계나 가해적 행동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성폭력 상황을 방임한 것이지요. 함께 웃고 놀렀다면 더 큰 잘못이고요. 그 학생들도 (집단)상담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성폭력피해 상담과 그에 필요한 심리치료, 놀이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하겠지요. 피해부모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위의 내용을 담아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신고를 원한다면 법적 처벌(촉법소년)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같은 반 여학생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춘기의 밝고 건강한 성이 왜곡 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경우

비디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벗은 몸을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카메라 등 이용 촬영)위반행위가 되므로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Ⅲ. 지적장애아동의 성폭력 발생 현황 및 대책

1. 지적장애아동의 성폭력 발생상황

간혹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고도 평소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여 피해상황을 누구에게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 협박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지식과 문제해결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집중적인 성교육을 통해 자기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아동은 목격과 발견, 신고 후에도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다. 자신이 당한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여 그림이나 인형으로 표현하거나 다양한 의사소통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적장애아동이 직접 자신의 성폭력을 알리기 어렵다면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상담교사 등은 장애 학생과 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훈련이 필요하다.

일부 지적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자녀가 인지부족으로 무능력하여 나타났다고 여기고 자녀 탓으로 돌리기도 하여 아예 상담이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거꾸로 일부 비장애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장애 학생들 탓으로 돌리기도 하여 모든 문제를 장애 피해학생이 떠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더 위축되고, 무능력감을 느끼는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

2. 지적장애아동의 성폭력 피해 특성

*(이현혜 2007: 정신지체아동의 성 바로알기-성학대 예방을 위한 지침서)

- ①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 ② 근친강간을 포함한 강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③ 성폭력의 주 피해 연령은 중고등학생이지만, 그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④ 성폭력 피해를 입는 주 대상이 3급의 경증 정신지적장애아동이다.
- ⑤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아는 사람이다.
- ⑥ 성폭력 피해 상황 진술 시, 지적장애아동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 ① 장애아동의 말을 믿는다.
: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②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 ③ 장애아동이 피해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녹음을 해서 여러 번 반복 진술하는 상황을 피한다.
- ④ 장애아동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분노를 나타내면 그 분노를 자신에게 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 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
: “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 ⑥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준다.
- ⑦ 병원진단을 받는다.
- ⑧ 장애인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는다.(스트레스가 과도할 수 있다)
- ⑨ 비밀유지: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아이의 피해사실을 알린다.
- ⑩ 성폭력상황에서 즉시 보호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 ⑪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낸다면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⑫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4. 장애인의 성교육 · 성상담 · 성범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탁틴내일성폭력상담소 02-3141-6191
-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02-742-0142
- 장애청소년 임파워링센터 에반젤리 031-388-2977
- 청소년상담지원기관 (국번 없이) 1388
- 여성폭력상담기관 (국번 없이) 1366
-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지역별 상담전화
<http://cafe.daum.net/nsvpcca>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Memo



참고문헌

- 2008 통합학급 성폭력 현황과 성교육 방향모색 심포지움 / 탁틴내일 (추국화, 송재민 외)
- 2007 정신지체아동 성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침서 / 경원사회복지회(이현혜)
- 2011 장애인 성교육의 이해와 방법 / 학부모연수자료(추국화)

2015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남동발간 2015-9호

- 발행일 : 2015년 12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이 현 정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

